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차등록사무의 일괄 이양 등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2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9924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등록사무의 일괄 이양 등(안 제7조제1항 등)	2
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기준 완화(안 제12조의2)	21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24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비치·관리,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봉인, 이전·말소등록, 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행 허가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는 한편 이에 연계된 전자적 방법 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등록사무의 일괄 이양 등(안 제7조제1항 등)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u>시·도지사</u> 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u>시장·군수·구청장</u> 은----- -----.
② <u>시·도지사</u> 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u>시장·군수·구청장</u> 은-----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u>시·도지사</u> 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환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u>시장·군수·구청장</u> 은----- ----- ----- -----.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 ----- ----- <u>시장·군수·구청장</u> -----.
⑤ <u>시·도지사</u> 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⑤ <u>시장·군수·구청장</u> 은----- ----- -----

현행	개정안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시·도지사</u>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u>시·도지사</u>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u>시·도지사</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신규등록) ① ----- ----- -----<u>시장·군수·구청장</u>----- ----- ---.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u>시장·군수·구청장</u>은-----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u>시·도지사</u>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1. <u>시·도지사</u>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 3. (생략)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u>시·도지사</u>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 ② ----- ----- -----. 1. <u>시장·군수·구청장</u>----- ----- 2. · 3. (현행과 같음) ③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현행	개정안
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u>시·도지사</u>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u>시·도지사</u>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u>시</u> <u>장·군수·구청장</u>----- ----- ----- ----- -----<u>준용하며, 이</u> <u>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외부장</u> <u>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등록</u> <u>번호판”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u> <u>으로 본다.</u> ⑧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변경등록) ①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전등록) ① ----- -----

현행	개정안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u>시·도지사</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u>시·도지사</u>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u>등록원부</u>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u>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u>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u>시장·군수·구청장</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⑥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u>등록원부</u> 열람신청 등) ----- -----<u>시장·군수·구청장</u>에게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u>시장·군수·구청장</u>은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 ----- ----- ----- ----- -----

현행	개정안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u>시·도지사</u>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u>시·도지사</u>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생략) ② (생략) ③ <u>시·도지사</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 <u>시·도지사</u>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	-----<u>시장·군수·구청장</u>-----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시장·군수·구청장이</u>-----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u>----- -----. 1. ~ 6. (현행과 같음) ④ <u>시장·군수·구청장은</u>----- -----

현행	개정안
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u>시·도지사는</u>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u>시·도지사는</u>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2. (생략)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 ----- -----, ----- ----- ----- -----. ⑤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 -----. ⑥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⑦ ----- ----- -----<u>시장·</u> <u>군수·구청장</u>----- -----. 1.·2. (현행과 같음) ⑧ -----

현행	개정안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u>시·도지사</u>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생략) ⑪ <u>시·도지사</u>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u>시·도지사</u>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압류등록) <u>시·도지사</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 ----- -----<u>시장</u> -----<u>·군수·구청장</u>----- ----- ----- ----- ----- -----. ⑨ ----- -----<u>시장·군수·구청장</u>----- ----- -----. ⑩ (현행과 같음) ⑪ <u>시장·군수·구청장</u>이----- ----- ----- ----- ----- ----- -----<u>시장·군수·구청장</u>에게 ----- -----. 제14조(압류등록)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u>시·도지사</u>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u>시·도지사</u>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u>시·도지사</u>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u>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시장·군수·구청장</u>----- -----.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현행	개정안
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시·도지사</u>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u>시·도지사가</u>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u>시·도지사는</u> 제2항에 따른 시정	----- ----- ----- ----- -----.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u>시장·군수·구청장이</u>----- ----- ----- ----- -----. ② <u>시장·군수·구청장</u>은----- ----- ----- -----. ③ <u>시장·군수·구청장</u>은-----

현행	개정안
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⑥ (생략)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시·도지사는</u>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⑦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 -----.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u>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u>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 ----- ----- <u>시장</u> ----- ----- -----.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② -----

현행	개정안
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u>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u> 또는 경찰서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u>시장</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 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 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 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비치·관리¹⁾, 신규등록, 등록번호판 부착, 등록번호 부여 등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업무 관련 조문 ＞

자동차등록 관련업무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문
등록원부	제7조
신규등록	제8조, 제9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0조
변경등록	제11조
이전등록	제12조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2조의2
말소등록	제13조
압류등록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제16조
임시운행허가	제27조
자동차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

또한, 시·도지사는 현행법 제7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²⁾

2) 「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 ③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이에 따른 현행 시·도지사의 자동차등록 업무 위임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지사 중 대전광역시 등 4개 광역시장은 직접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지사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 시·도지사의 자동차등록업무 위임현황 >

구 분	위 임	비 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위임	
경기도	시·군 위임	
인천광역시	자치구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위임	
충청남도	시·군 위임	
충청북도	시·군 위임	
대전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본1, 분1)
경상북도	시·군 위임	
경상남도	시·군 위임	
대구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본1, 분3)
울산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
부산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본1, 분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위임	
전라남도	시·군 위임	
광주광역시	자치구 위임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위임	

자료 : 국토교통부

-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등록 등에 관한 권한과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괄 이양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생활권 단위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재 직접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등록차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군수·구청장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의 이양 시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이관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특정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쏠림 현상 등으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등록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음에도 직접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의 효

울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상황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국의 자동차등록업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이양함에 따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등 지방분권 활성화 측면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관리에 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등의 업무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등록업무를 일괄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고 있는 시·도에서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업무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³⁾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등록번호판 부착 관련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면,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이 수반되어야 등록번호판 발급, 부착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광역시에서는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 중으로 사무의 일괄 이양 시 조직개편을 수반하므로 시행일 연장이 필요함.

2) 울산광역시

현재도 사업소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고, 차량등록업무를 구·군으로 이관할 경우 업무 분산에 따른 업무 중복 및 행정비용 증가, 전문성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함.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3) 대전광역시

많은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업무로 시범사업 및 단계적 이관, 국가 재정지원 등 선행조치 후 검토가 필요함.

4) 대구광역시

등록대수가 특정 구·군별로 편차가 심해 특정 구·군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5)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 업무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의 권한과 사무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인적, 물적자원 운영의 비효율성, 민원인의 불편함 등을 고려 하여 현행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 이양 시 각 구·군별 최소 1개 이상의 팀 또는 부서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록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주기를 바랍.

6)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가 개정되어 등록번호판 부착관련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면,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이 수반되어야 등록번호판 발급, 부착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음.

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기준 완화(안 제12조의2)

개정안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u>등록원부 발급신청</u>)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u>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u>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u>등록원부 열람신청 등</u>) ----- ----- <u>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u>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등록 등의 법률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당권 등을 가진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원부 열람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관계인은 자동차의 소유자 이외에도 그 자동차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는 사람으로,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없다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초본 발급은 자동차 이해관계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은 자동차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행위로 자동차 이전등록시에만 발급가능하던 규정을 이해관계인의 필요에 따라 열람·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자동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므로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등록업무 위임현황**

구 분	위 임	비 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위임	
경기도	시·군 위임	
인천광역시	자치구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위임	
충청남도	시·군 위임	
충청북도	시·군 위임	
대전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본1, 분1)
경상북도	시·군 위임	
경상남도	시·군 위임	
대구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본1, 분3)
울산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
부산광역시	-	차량등록사업소(본1, 분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위임	
전라남도	시·군 위임	
광주광역시	자치구 위임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위임	